



교원인사관리규정

제정일	1980. 3. 1
개정일	2024. 5. 1
개정차수	23차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학산학원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동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학이념에 따른 교원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공정한 교원 인사행정의 기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법인정관이 정하는 교원에게 적용한다.

② 교원의 인사규정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학제간 교육·연구·산관학협력·봉사활동 등을 위하여 2개 학과 또는 그 이상의 학과를 소속으로 하는 JA(Joint Appointment) 교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5. 1)

제 3조 (직위) ① 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및 강사로 구분하며, 전임교원의 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② 비전임교원으로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특임교수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 1]

제 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 호 1과 같다.

1. 임용 :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보, 전직, 강임,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파면을 말한다. (개정 2016. 9. 1)
2. 직위 : 1인의 교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직책 : 1인의 교원에게 부여하는 보직을 말한다.
4. 승진 : 직급이 하급으로부터 상급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5. 승급 : 호봉이 하급으로부터 상급으로 승급함을 말한다.
6. 전보 : 동일한 직급 내에서 보직 또는 직책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6. 9. 1)
7. 전직 :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개정 2016. 9. 1)
8. 강임 : 직급이 현재로부터 하급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9. 1)
9. 파견 : 소속은 바꾸지 않고 일시적으로 타기관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9. 1)
10. 휴직 : 교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일시적인 사정으로 직무를 일정 기간 떠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9. 1)
11. 직위해제 :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 9. 1)
12. 정직 : 교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을 말한다. (개정 2016. 9. 1)
13. 복직 :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중에 있는 교원을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9. 1)

14. 면직 : 교원의 신분을 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 9. 1)

15. 해임 · 파면 :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직권에 의하여 교원의 신분을 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 9. 1)

제 5조 (임용의 효력) ① 임용은 임용권자의 인사발령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② 인사발령은 취소할 수 없다. 단, 사무상의 착오 또는 허위 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는 그 발령을 취소하거나 해당 교원을 해임 또는 징계할 수 있다.

제 6조 (소급임용 금지) 인사발령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일자를 소급할 수 없다.

1. 교원이 사망할 때

2. 교원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3. 인사발령을 취소할 때

제 7조 (정년)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로 한다. 단,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1. 1)

제 8조 (정원) 교원의 정원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정한다.

제 2 장 교원 인사위원회

제 9조 (설치) 교원(총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2.13, 2015. 8. 1, 2016.10. 1)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각 행정처장과 위촉직 위원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2015. 8. 1, 2021. 5. 1)

② (삭제 2015. 8. 1)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

제11조 (위원장 및 직무) ① 위원회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개정 2015. 8. 1, 2021. 4.15)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기능) ① 위원회는 교원인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를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 또는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7.22, 2016.10. 1, 2019. 8. 1)

2.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 2.13)

3. 승진 동의 요청에 관한 사항

4.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교육·연구·산관학협력·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 2016.10. 1)

1. (삭제 2015. 8. 1)

2. (삭제 2015. 8. 1)

3. (삭제 2015. 8. 1)

4. (삭제 2015. 8. 1)

제13조 (위원회 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9. 2.13)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13)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5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15. 8. 1)

② 간사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 2.13, 2015. 8. 1)

제16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3 장 정년보장 교원임용심사위원회

제17조 (설치) 교수의 정년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정년보장 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각 행정처장과 위촉직 위원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2009. 2.13, 2015. 8. 1, 2021. 5. 1)

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 (개정 2015. 8. 1, 2021. 4.15, 2021. 5. 1)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

제19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9. 2.13)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③ 위원 중 자신에 관한 심의 시에는 그 심의에 참석 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의한 재적위원이 있는 경우의 위원수는 그 재적위원수를 감한 수로 한다.

⑤ 위원회는 출석위원의 날인을 받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13)

제21조 (심사기준) 정년보장 대상 교원 임용여부 심의는 재임기간 중에 다음 각 호 사항을 참작하여 심사한다.

1. 교수 및 연구능력

2.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술활동

3.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한 능력과 자세

4.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5. 학교발전에 대한 공헌이나 참여도

제22조 (심사자료) 정년보장 임용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총장은 대상자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13)

2. 정년보장 교원 임용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인사기록카드 사본
- 나. (삭제 2015. 8. 1)
- 다. 정년보장 교원임용심사 평정표
- 라.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23조 (정년보장 임용대상)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서 정년까지 임용할 수 있는 교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수
- 2.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 임용되는 자

제24조 (정년보장 임용 제외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의결을 거쳐 정년보장 교원임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의 결격사유 해당자 (개정 2012. 7.22)
- 2.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의 당연퇴직 대상자 (개정 2012. 7.22)
- 3. (삭제 2015. 8. 1)

제25조 (관계자의 회의 출석 및 자료제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자의 회의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15. 8. 1)

- ② 간사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 2.13, 2015. 8. 1)

제27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4 장 임 용

제 1 절 임 용 (개정 2016.10. 1)

제28조 (임용) ① 본교의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2.13, 2015. 8. 1, 2016.10. 1)

② 교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 후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비전임교원 및 강사는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9. 2.13, 2016.10. 1, 2019. 8. 1, 2021. 7. 1)

③ 본교 내 부총장, 처·국·과장 및 부속·부설연구기관장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하고, 책임교수는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9. 2.13, 2014. 5. 1, 2016.10. 1, 2019. 1. 1)

[제목개정 2016.10. 1]

제29조 (임용요건 및 임용에 관한 보고) ① 교원으로서 임용되기 위해서는 본교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실적이 있어야 한다.

- 1. 현 직급에서 교수업적평가 연구영역 누적 점수(단, 기초 점수 합계로 계산) 20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 8. 1)
 - 가. (삭제 2015. 8. 1)
 - 나. (삭제 2015. 8. 1)

- 다. (삭제 2015. 8. 1)
 - 라. (삭제 2015. 8. 1)
 - 마. (삭제 2015. 8. 1)
 - 바. (삭제 2015. 8. 1)
 - 사. (삭제 2015. 8. 1)
2. 조교수 신규임용의 경우 임용일 기준 4년 이내의 연구실적물이 200% 이상이어야 하며, 인정 환산율은 교원연구실적심사규정 제7조에 의한다. 단, 연구실적이 부족할 때에는 1년 이내에 제출 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유예할 수 있으며 서약기간이 경과하여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 7.22, 2013. 3. 1, 2015. 8. 1)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교원(외국인전임교원, 강의전담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의 경우 연구실적에 대한 임용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7. 6.21)
- ② 교원을 임용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 단, 신원조사결과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한다. (개정 2016.10. 1)
- [제목개정 2016.10. 1]
- 제30조 (결격사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당연퇴직 시킨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당연 퇴직시킨다. (개정 2012. 7.22)
- 제31조 (임용기간의 계산) ① 재직 중에 승진·전직 또는 강임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그 기간을 계산한다.
- ② 임용기간이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 ③ 공무로 국외파견 또는 국외 출장중인자의 그 파견 또는 출장 중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파견 또는 출장 잔여기간까지를 임용기간으로 본다. 다만, 그 잔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 절 신규임용

- 제32조 (신규임용 기간) ① 본교의 교원을 신규임용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근무기간
- 가. 교수 : 정년보장,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나. 부교수 : 6년
 - 다. 조교수 : 2년 (개정 2012. 7.22, 2015. 8. 1)
 - 라. (삭제 2012. 7.22)
 - 마. 강사 : 1년 (단, 강사인사관리규정 제6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1)
2. 급여 : 업무의 곤란도, 업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 학부(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교육 · 연구 · 산관학협력 · 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8. 1)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 2.13)

제33조 (신규임용 기준) ① 교원 신규채용은 특별한 경우(재외 한국인 학자, 외국인, 특수과목 전공자 채용 등)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 및 산업현장 근무경력 소지자를 공개채용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한다.

② 타 대학에서 재직 중 퇴직한 교원을 신규 임용할 경우 전직 대학에서의 직위보다 상위직에 임용하지 못한다.

③ 담당과목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과 동일한 자를 임용한다.

제34조 (신규임용 원칙)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기는 매학기초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임 교원의 직위는 조교수로 계약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 7.22)

③ 교원을 신규채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 총장은 지원 마감일 15일 이상으로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강사는 지원마감일 5일 이상으로 공고한다. (개정 2013. 3. 1, 2015. 8. 1, 2019. 8. 1)

제35조 (신규임용 심사) ① 교원의 신규임용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심사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한다.

1. 기초심사 : 학부(과)장, 해당 전공 전임교원, 타 대학 심사위원 (개정 2013. 3. 1)
2. 서류심사 : 학부(과)장, 해당 전공 전임교원, 타 대학 심사위원 (개정 2013. 3. 1)
3. 연구실적심사 : 학부(과)장, 해당 전공 전임교원, 타 대학 심사위원 (개정 2013. 3. 1)
4. 면접심사 : 총장, 부총장, 교원 인사위원, 학부(과)장 (개정 2009. 2.13, 2021. 5. 1)
5. 강의평가심사 : 학부(과)장, 해당 학부(과)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 1명, 인사위원 1명

② 채용 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본교 소속의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한다.

③ 교원의 신규채용에 지원한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되는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다.

제 3 절 승진임용

제36조 (승진) ① 현 직급에서 승진 소요년수에 해당하는 교원 중 교원 승진심사 평가기준에 의해 종합평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승진 임용한다. 이 경우 제32조(신규 임용기간)에 의거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개정 2009. 2.13, 2013. 3. 1)

1. 승진임용기간

- 가. 교 수 : 정년보장
- 나. 부교수 : 6년
- 다. (삭제 2015. 8. 1)

2. 승진소요 년수 (개정 2012. 7.22)

직급별	조교수 → 부교수	부교수 → 교수
소요년수	6	5

② 교원 승진심사 평가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3. 3. 1)

③ 승진 임용시기는 년 1회 10월 1일자로 한다. (개정 2013. 3. 1)

제37조 (승진임용의 요건) ① 교원이 승진임용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실적물 : 현직급에서 교수업적평가 연구영역 누적점수(단, 기초 점수 합계로 계산) 200 점 이상 (개정 2015. 8. 1)

2. 산업체 현장연수 : 현직급에서 전공과 관련있는 산업체에서 7일 이상의 연수

제38조 (승진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 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6.10. 1)

◆ 정직 : 18개월 ◆ 감봉 : 12개월 ◆ 견책 : 6개월 ◆ 시말서, 경고 2회 이상 : 6개월
(개정 2016.10. 1)

제 4 절 재임용 (개정 2015. 8. 1)

제39조 (재임용) ①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연구·산관학협력·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재임용한다. 이 경우 제32조(신규 임용기간)에 의거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개정 2009. 2.13, 2013. 3. 1, 2015. 8. 1)

1. 재임용기간 (개정 2015. 8. 1)

가. 교수 : 정년보장

나. 부교수 : 6년

다. 조교수 : 4년 (개정 2015. 8. 1)

라. (삭제 2012. 7.22)

2. 임용요건

가. 재임용 평가 점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신설 2013. 3. 1, 개정 2015. 8. 1)

나. 재임용기간 내 교수업적평가 연구영역 누적 점수(단, 기초 점수 합계로 계산) 200점 이상 (개정 2015. 8. 1)

②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으로서 재임용이 되지 아니한 자는 당연이 면직한다. (개정 2015. 8. 1)

③ 임용기간 만료 전 정년 도래자에 대해서는 정년이 우선 적용되므로 정년까지 임용하여야 하며 임용장에는 정년까지 임용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중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만료일로부터 초과되는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될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3. 학위취득을 위하여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4.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 국민 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5.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6.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연수하게 된 때
- ⑤ 임용권자는 재임용 심사를 거쳐 근무기간 종료일 2월전까지 해당대학 교원에게 다시 임용 할 것인지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 2016.10. 1)
- [제목개정 2015. 8. 1]

제 5 절 겸임·초빙교원

제40조 (자격) ① 겸임교원의 자격은 교수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다만, 예 · 체능계열 및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교수자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7.22)

1. 담당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며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현직자로 유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개정 2012. 7.22)
 2. 담당과목의 교수능력이 있는 자 (개정 2012. 7.22)
 3. 소속기관장의 동의가 있는 자
 4. 주당 1시간 이상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자
- ② 초빙교원의 자격은 교수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담당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유경험자로서 임용일 현재 퇴직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학생지도 및 교수능력이 있는 자
 3. 주당 1시간 이상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자
 4. 만화, 전통공예, 장례지도 등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한 초빙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교수자격기준에 미달하나 당해 분야에 장기간 종사하여 전문가로 인정될 수 있는 자

제41조 (직명) 겸임·초빙교원의 직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겸임교원 : 겸임교수, 겸임부교수, 겸임조교수 (개정 2012. 7.22)
2. 초빙교원 : 초빙교수, 초빙부교수, 초빙조교수 (개정 2012. 7.22)

제42조 (채용 가능인원)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을 합하여 계열별 법정 교원정원의 1/2 범위 내에서 임용한다.

제 6 절 명예 · 특임교수

제42조의 2(명예교수) ① 명예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본교에서 전임교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교수로서 재직 중 본교의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자
 2. (삭제 2022.12. 1)
- ② 명예교수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0. 1. 1]

제42조의 3(특임교수) ① 특임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교육 및 연구 업적이 뛰어난 자

2. 전문직 또는 각 기관의 임원급 인사로서 현장실무경험이나 업적이 탁월하여 본교 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3. 기타 총장이 특임교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② 특임교수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0. 1. 1]

제 5 장 보 수

제43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교육공무원 봉급과 일반 표준생계비, 민간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급별 교직원 보수규정에 의한다.

제44조 (정기승급) ① 교원의 승급은 매년 3월 1일, 6월 1일, 9월 1일, 12월 1일자로 행한다.
② 최고 호봉이후에는 가호봉으로 승급할 수 있다.

제45조 (승급실격) 승급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 만료 후 1년 미만자
2. 1월 이상 휴직한 자. 단, 공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견책 및 2회 이상의 경고와 시말서 1회 등의 문책을 받은 자

제46조 (경력의 환산) 교원의 경력 환산은 별도의 환산율 표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 6 장 능 률

제47조 (삭제 2015. 8. 1)

제48조 (포상)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한 때에는 포상을 행한다.

1.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나 업적이 있는 자
2.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속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3. 창의적인 제안으로 예산절감 등 교육개선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
4. 재해 기타 손실을 사전에 방지한 공로가 있는 자

제49조 (포상자의 특전) 총장은 포상을 받은 자에게 그 정도에 따라 특별승급을 실시하거나 이를 승진심사 평가에 반영하여 특별 승진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9. 2.13, 2015. 8. 1)

제 7 장 신 분 보 장

제50조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 ②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8. 1)
- ③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50조의 2 (전보) 교원이 학생 정원조정 또는 학부(과) 개폐 등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는 전보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 1]

제51조 (휴직)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의2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 2016.10. 1)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5. 8. 1)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적 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 국민 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만 8세 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12. 7.22)
 - 7의 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신설 2016.10. 1)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신설 2015. 8. 1)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 자로 종사하게 된 때 (신설 2019.11. 1)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신설 2019.11. 1)
 13.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교원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15. 8. 1)
- ②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한다.

제52조 (휴직기간) ①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51조 제1항 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8. 1)
 2. 제51조 제1항 2호 및 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5. 8. 1)
 3. 제51조 제1항 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51조 제1항 5호 및 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8. 1)
 5. 제51조 제1항 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51조 제1항 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08. 3.31, 2021. 7. 1)
- 6의 2. 제51조 제1항 제7의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16.10. 1)
7. 제51조 제1항 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51조 제1항 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

9. 제51조 제1항 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 7. 1)

10. 제51조 제1항 11호의 휴직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 7. 1)

11. 제51조 제1항 1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한차례에 한정한다. (신설 2021. 7. 1)

② 제1항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1조 제1항 2호, 4호 내지 9호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21. 7. 1)

제53조 (휴직기간의 연장) 휴직자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제51조의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 15일 전에 휴직기간 연장원을 제출하고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4조 (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자는 교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51조 제1항 제2호·제7호·제7의2호 및 공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개정 2016.10. 1)

③ 휴직기간의 보수는 교직원 보수규정에 의한다.

④ 휴직중인 교원은 휴직기간 만료 15일전에 복직신청을 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기간 만료 다음 날짜로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⑤ 휴직기간 만료 및 휴직사유가 소멸되고도 복직하지 아니하는 교원은 자동 면직된다.

제55조 (휴직교원에 대한 처우) 휴직기간 중 재임용기간이 도래한 교원은 복직 후 휴직원을 제출 당시에 남은 잔여기간을 근무한 후 재임용한다. (개정 2015. 8. 1)

제55조의 2 (파견근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파견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

1.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 기관 또는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가기관,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국내외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 교육, 연구, 학술진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 및 교육부 관련기관에서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파견사유와 목적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복귀하여야 한다.

④ 파견중인 자는 교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파견기간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파견기간 중 재임용기간이 도래한 교원은 파견근무 종료 후 파견 시작일 당시에 남은 잔여기간을 근무한 후 재임용한다.

[본조신설 2016. 9. 1]

제56조 (직위해제 및 해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5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험저히 어려운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해서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 ④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 시킬 수 있다.
- ⑥ 제1항 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0. 1]

제56조의 2 (의원면직의 제한) ①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정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 ②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0. 1]

제 8 장 복 무

제57조 (복무규정)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본 규정 외에 따로 본교 교직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 9 장 징 계

제58조 (징계규정) 교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따로 교원 징계규정에 따른다.

제59조 (경고처분) ① 제56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그 비위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교원의 본

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교원에 대하여 총장은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2.13)

② 경고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승진 또는 승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60조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기록 카드에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정직 : 7년 2. 감봉 : 5년 3. 견책, 경고 : 3년

제 10 장 인 사 기 록

제61조 (임용서류) 교원을 임용 제청할 때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 (인사기록정리) ① 교원의 임용, 징계, 보직, 겸직 및 포상을 받은 때에는 이를 당해 교원의 인사기록 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 2016.10. 1)

② 제1항 이외의 교원의 인사기록을 정정, 변경 또는 추가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인사기록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 (전력조회) 전력경력을 가진 자를 신규 임용할 경우에는 전력경력조회를 하여야 한다.

제64조 (인사발령통지) ① 교원을 신규, 승진, 재임용, 보직 임용할 때에는 임명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5. 8. 1)

② 제1항 이외의 인사발령은 구두 또는 인사발령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65조 (발령대장) ① 교원의 인사발령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발령대장을 비치 보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교원에 적용하며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의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임용 중인 시간강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간강사로 이미 임용된 자는 그 임용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